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이유

2007. 2. 23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과명칭을 변경하고, 업무를 신규 분장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“민원봉사과”의 명칭을 “민원여권과”로 변경(안 제5조제1항)
- 총무국에 여권업무 신규분장(안 제5조제2항제15호)

#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2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

### 4. 검토의견

행정기구의 명칭은 이용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

여권업무를 처리하게 될 “민원봉사과”의 명칭을 “민원여권과”로 변경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

※ 해운대구, 사상구도 “민원여권과”로 명칭지정

## 《 관 계 법 령 》

### 지방자치법 제102조

제10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#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

제10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 및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·군·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·과·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시·군·구 본청의 실·장·국장 및 과·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 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⑤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⑥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 및 실·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